「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12. 13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19. 6. 10. 개정 판 (시행 2019. 9. 1.)

바뀜 5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28/compare?from=1234&to=111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02:0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과정)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신학석사(Master of Divinity(M.Div.)), 글로벌미션리더십 전공 미션리더십석사(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(M.M.L.))를 둔다. 〈개정 2016-06-20〉	**제3조(과정)**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헉사과정으로 신학석사(Master of Divinity(M.Div.)), 선교리더십 석사(Master of Missional Leadership(M.M.L.))를 둔다. 〈개정 2016-06-20〉
제4조(학과 및 정원)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 1. 석사과정: 신학과 30명 〈개정 2021-12-13〉 2. 〈삭제 2013-02-15〉	**제4조(학과 및 정원)**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과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 1. 석사과정: 신학과 40명 2. 〈삭제 2013-02-15〉
제10조(과정의 종류)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(M.Div.), 글로벌미션 리더십석사(M.M.L.) 전공을 둔다. 〈개정 2016-06-20〉	**제10조(과정의 종류)**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(M.Div.), 선교리더십석사(M.M.L.) 과정을 둔다. 〈개정 2016-06-20〉
제60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(별지 제11호 서식)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(별지 제12호 서식) ③ 논문 최종본 5부: 대학원 1부(날인본), 예언의신연구원 1부, 도서관 1부, 국회도서관 1부, 국립중앙도서관 1부(양장본) 〈개정 2021-12-13〉	**제60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**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(별지 제11호 서식) ② 학위논문 이용 허락서(별지 제12호 서식) ③ 논문 최종본 8부: 대학원 1부(날인본), 예언의신연구원 1부, 도서관 2부, 국회도서관 2부, 국립중앙도서관 2부(하드커버)
제64조(신학대학원위원회)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, 연구산학처장,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.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	**제64조(신학대학원위원회)** 본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실장, 연구산학처장, 신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신학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장 서기로 한다.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